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1921호 2025. 5. 26.(월)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402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05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6호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 결정·고시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71호 서구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해제 확정 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77호 도로구역(구도 1843호선) 결정 및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열람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86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95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4]**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402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대회의실, 대상황실, 제2청사 회의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련부서”란 사용계획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부서) 회의실 관리부서는 총무과(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제한)”을 “(사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실 사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국·단 및 실·과, 보건소, 동 행정복

지센터로 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단체 등에 회의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책 관련 행사의 경우

2. 구의 업무를 단체 등에서 대행하는 행사의 경우

3. 구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2. 공공질서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실·국·과·직속기관·출장소·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용일로부터 5일전”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단 및 실·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용일로부터 5일 전”으로, “총무과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단체 등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행사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제4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일로부터 2일 전까지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회의실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4. 사용 승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제9조제2호 중 “총무과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총무과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회의실 사용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메일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사 용 시 설		□ 대회의실 □ 대상황실 □ 제2청사 회의실		
사 용 목 적			참석인원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총 시간 사용)		
사용설비	기본설비			
	부대설비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뒷면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인천광역시 서구청 회의실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의실 사용 신청 및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1년 ※ 유의사항: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관련법령 자격요건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신청에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회의실 사용 서약서

사용 준수사항
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실 사용이 결정되면 사용자는 회의실을 인계받고 실내시설 및 물품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사용자는 회의실을 청결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 관리부서의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건물이나 실내시설 또는 물품을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며, 이상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4. 관리자 허가 없이 회의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5.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 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사용시 훼손한 시설물 및 물건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하며,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제9조(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승인서

사 용 자	성명(단체)		사용장소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제6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205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205호선, 사업명: 당하동 소로 1-205호선 회차로 조성사업)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비치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5.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18-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205호선)

○ 명 칭: 당하동 소로 1-205호선 회차로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도로	소로	1	205	11	11	100	84	16	회차로 면적 182.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성 명	주 소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2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6.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8,251.8	182.3					
1	당하동	1318-9	공	8,251.8	18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06번길 34-1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5.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5-05-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57-3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06번길 34-1 (석남동)	20090706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0	인천광역시 서구 경중로 12 (경서동)	20201123	서구의 경제상업 중심지에서 착안	
3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동화시로 160 (불로동)	20200420	갈산과 목지를 잇는 고개 아래 골의 이름을 따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44-6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93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993-5	인천광역시 서구 당곡로3번길 20 (원당동)	20200720	당곡로에서 30미터 지점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993-4	인천광역시 서구 당곡로3번길 18 (원당동)	20200720	당곡로에서 30미터 지점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70-33	인천광역시 서구 창고개로126번길 7 (가좌동)	20090706	창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2-6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19-2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56-1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62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5-05-26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357 (신현동)	건물멸실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158 (마전동)	건물멸실	20081231	마전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96호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 고시합니다.

2025.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건 명 :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 고시」
2. 결정항목

가. 2025년도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

1) 표준가격기준액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 · 고시하는 금액

2)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3) 산정지수(용도지수, 층지수, 가감산율)

나. 2025년도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유형별 신축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고시하는 단위면적 당 건축비용

2)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및 산정기준

3)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4)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5) 가감산특례

6)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등

다. 2025년도 기타물건 기준가격 변경 결정·고시

1) 기타물건 기준가격 중 차량 28종, 에너지공급시설 67종

3. 세부내역

가. 서구청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나. 기타물건 기준가격 재고시 목록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타물건 중 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171호

서구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해제 확정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해제 공고합니다.

2025.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구분	해제지역	해제일	해제 사유	비 고 (지정일자)
서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석남동 509번지 일대	2025. 5. 26.	지역 여건 변동 <청소년유해환경감소>	2000. 1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177호

도로구역(구도 1843호선) 결정 및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열람

구도 1843호선【사업명: 원당대로~검단로(오류동 구도 1843호선) 도로개설공사 】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 열람합니다.

2025.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 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경과지	⑩총연장 (m)	⑪폭원 (m)
결정	구도	1843호선	-	인천 서구 오류동 일원	16,322㎡	오류 광 2-23	오류 대 3-58	-	614	20

○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26호선) 자동실효 예정에 따라 도로구역(구도 1843호선) 결정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일 ~ 2030.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314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로구역(구도 1843호선) 사업
○ 명칭: 원당대로~검단로(오류동 구도 1843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16,322㎡
○ 규모: L=614m, B=20m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도로구역 결정일
○ 준공예정일: 2030.12.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4층 도로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원당대로~검단로(오류동 구도 1843호선) 도로개설공사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결정	오류동	434-314	도	6,567	9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2	결정	오류동	434-557	장	27	27	(주)새**	인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산업단지점)	근저당권
3	결정	오류동	434-548	장	266	1	(주)새**	인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산업단지점)	근저당권
4	결정	오류동	434-81	장	1,409	1	(주)새**	인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산업단지점)	근저당권
5	결정	오류동	434-303	장	72	63	(주)새**	인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산업단지점)	근저당권
6	결정	오류동	434-302	장	1,843	1,832	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남동공단기업금융2센터)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결정	오류동	434-65	장	2,007	83	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남동공단기업금융2센터)	근저당권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남동공단기업금융2센터)	근저당권
							김**	서울 양천구 목동 ** 목** **동 **호			
							안**(주)	인천 서구 석남동 **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인천서지점)	가압류
									코**(주)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동 **	근저당권
							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			
							김**	서울 영동포구 당산동 **가 ** 강** **동 **호	국	파주세무서	압류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김포시		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구로지점내강서지역관리센터)	가압류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태**	인천 서구 석남동**	김**	안동시 운안동**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서지점)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인천지점)	가압류
									대한보증보험(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가압류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빌딩(수원지점)	가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대한보증보험(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인천지점)	근저당권
									두**(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	근저당권
									(주)서울신탁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신정동지점)	근저당권
							김**	서울 강남구 도곡동 ** 개** **동 **호			
							이**	인천 남구 용현동 **			
							이**	인천 남동구 남촌동 ** ** **동 **호	국	남동세무서	압류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신**	서울 도봉구 번동 **			
							함**	인천 남구 도화동 **	(주)정리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인천지사)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빌딩 (인천지점)	가압류
									국	인천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빌딩 (강북신용지원단)	강제경매개시결정
							㈜정**	인천 계양구 효성동 **	국	북인천세무서	압류
									이**	서울 강동구 길동 ** ** **동 **호	근저당권
							㈜대**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지점)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서지점)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가압류
									대한보증보험(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인천지점)	근저당권
							문**	인천 남구 도화동 **			
							이**	인천 서구 검암동 **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이**	인천 서구 가정동 ** 한** **동 **호			
							김**	서울 도봉구 수유동 **	국	도봉세무서	압류
									현**(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 **	가압류
									서울특별시 강북구		압류
							최**	인천 서구 신현동 ** ** **동 **호	인천광역시 남구		압류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대**	인천 서구 가좌동 **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동**	인천 서구 석남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안**	인천 동구 송현동 **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나**	인천 남구 동촌동 ** ** **동 **호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서지점)	가압류
									현**(주)	용인시 남사면 북리 **	가압류
									국	남인천세무서	압류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빌딩 (인천지점)	가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 **동 **호	근저당권
							광**(주)	인천 남동구 논현동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압류
							이**	인천 서구 가좌동 ** ** **동 **호			
							영**(주)	인천 서구 오류동 **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삼**	인천 서구 두루물로 ** (오류동)			
							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 ** **동 **호			
							조**	인천 부평구 부평동 ** ** **동 **호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주)부**	인천 서구 오류동 **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서지점)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부평지점)	가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주)경기은행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1127-1 (신현동지점)	근저당권
							조**	인천 부평구 부평동 ** ** **동 **호			
							(주)한**	인천 서구 오류동 **			
							장**	인천 부평구 산곡**동 **			
							조**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이**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신**	서울 은평구 신사동 **			
							배**	인천 서구 가좌동 ** ** **동 **호			
							송**	대전 서구 월평동 ** **층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최**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백**	서울 구로구 오류동 **			
							허**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신**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 ** **동 **호			
							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			
							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 **동 **호			
							최**	인천 계양구 박촌동 ** ** **동 **호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디**(주)	인천 서구 오류동 **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인천원당지점)	근저당권
							조**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검단지점)	근저당권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윤**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 ** **동 **호	(주)우리 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옥련동지점)	근저당권
							강**	인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김**	인천 계양구 당미길** ** **동 **호	계양농업 협동조합	인천 계양구 박촌동 101-4 (동양지점)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부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김**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	(주)한국씨티은행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경서동지점)	근저당권
							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 ** **동 **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 ** **동 **호			
							박**	인천 부평구 일신동 **			
							(주)태**	인천 서구 두루물로 **번길 ** (오류동)	(주)국민은행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검단산업단지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삭시로**번길 **			
							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삭시로**번길 **			
							㈜삼**	인천 서구 원당대로**번길** (오류동)			
							유**	인천 부평구 부개로 ** ** **동 **호	(주)국민은행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검단산업단지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주)퓨**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나길 **, **			
							(주)새**	인천 서구 원당대로 **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이**	인천 서구 검단로 ** ** **동 **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주)대**	인천 서구 길무로 ** (오류동)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임학동지점)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하**	인천 서구 두루물로** 번길 ** (오류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인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오왕지점)	근저당권
							이**	서울 구로구 경인로 **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인천원당지점)	근저당권
							서**	인천 부평구 부일로 ** ** **동 **호			
							김**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 **동 **호			
							황**	서울 강서구 유현로 ** ** **동 **호			
							황**	서울 강서구 강서로 ** ** **동 **호			
							허**	인천 부평구 부흥로 **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부평지점)	근저당권
							김**	인천 서구 연희로 **번길 **, **동 **호	(주)신한 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김포한강금융센터)	근저당권
							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 번길** (오류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인천원당지점)	근저당권
							지**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 ** **동 **호	(주)국민 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계산역지점)	근저당권
							김**	인천 서구 검단로** 번안길 ** ** **동 **호			
							㈜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 **호			
							㈜나**	인천 서구 원당대로** 번길 **(오류동)	(주)신한 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인천주안금융센터)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결정	오류동	434-319	잡	1,124	204	배**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 ** **동 **호	(주)국민은행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청천동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원**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 ** **동 **호	(주)국민은행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청천동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김**	인천 계양구 살라리로 ** ** **동 **호			
							김**	서울 관악구 신림로** 길 **, **호			
							강**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 ** **동 **호			
							한**	인천 서구 원당대로** 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등촌역지점)	근저당권
							신**	인천 서구 원당대로** 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등촌역지점)	근저당권
							김**	인천 계양구 서운로 ** ** **동 **호			
							박**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번길 ** ** **동 **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인천서구청역지점)	근저당권
							㈜청**	서울 마포구 성암로** 길 **, **호 (상암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인천지점)	근저당권
							(주)케**	인천 서구 두루물로** 번길 ** (오류동)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검단신도시지점)	근저당권
							(주)아**	인천 서구 두루물로** 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서**	인천 서구 두루물로** 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인천북항지점)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결정	오류동	434-23	도	2,727	1	선**	인천 부평구 산곡동 ** ** **동 **호			
							임**	인천 연수구 연수동 ** ** **동 **호			
							임**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 **			
							우**	인천 서구 석남동 ** ** **층			
							㈜광**	인천 서구 오류동 **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지점)	근저당권
							김**	인천 서구 비지니스로 **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 ** **동 **호	(주)우리 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공항금융센터)	근저당권
							양**	인천 서구 청마로51번안길 **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지점)	근저당권
							신**	인천 중구 인중로 ** ** **동 **호	(주)국민 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부평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이**	인천 서구 오동로** ** **동 **호	(주)신한 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파주금융센터)	근저당권
							정**	인천 서구 원당대로**번길 **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로 **	(주)신한 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충정로금융센터)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결정	오류동	434-23	도	2,727	1	문**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 ** **동 **호			
							문**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번길 ** ** **동 **호			
							문**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로 **, ** ** **동 **호			
							㈜태**	인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10	결정	오류동	846-3	구	293	17	국	기획재정부			
11	결정	오류동	850-7	제	23	23	국	국토교통부			
12	결정	오류동	846-7	잡	117	37	국	기획재정부			
13	결정	오류동	847-4	답	498	494	김**	인천 서구 봉수대로**번길 ** (금곡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지점)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결정	오류동	846-6	도	143	43	국	기획재정부			
15	결정	오류동	846-1	대	1,488	729	㈜성**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김포지점)	근저당권
16	결정	오류동	844	답	681	145	㈜성**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김포지점)	근저당권
17	결정	오류동	843-2	잡	934	620	㈜성**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김포지점)	근저당권
18	결정	오류동	807-1	임	619	131	정**	인천 부평구 산곡동 ** ** **동 **호			
19	결정	오류동	807-9	임	9,465	3,484	허**	인천 부평구 산곡동 ** ** **동 **호			
							정**	인천 부평구 산곡동 ** ** **동 **호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결정	오류동	434-398	답	289	289	이**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			
21	결정	오류동	434-385	대	1,510	36	이**	인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원당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인천 서구 마전동 933-7 (원당지점)	근저당권
22	결정	오류동	842-4	전	4,012	259	서**(주)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 **호	농협은행(주)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 1가) (동암금융센터)	근저당권
23	결정	오류동	842-6	전	1,293	1,293	서**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 ** **동 **호			
24	결정	오류동	842-3	답	3,491	623	이**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			
25	결정	오류동	842-2	답	5,917	552	이**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			
26	결정	오류동	842-1	전	2,430	511	윤**	인천 부평구 장제로 **, **호	청주농업 협동조합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 (용암동) (중부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황**	서울 구로구 오류로**길 ** ** **동 **호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결정	오류동	838	답	1,061	504	조**	인천 서구 청마로** 번길 ** ** **동 **호			
							조**	인천 서구 완정로** 번길 ** ** **동 **호			
28	결정	오류동	837	답	2,194	531	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 ** **동 **호			
							이**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			
							이**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이**	인천 서구 단봉로** 번길 ** (오류동)			
							이**	인천 서구 봉화로** 번길 ** (오류동)			
							김**	서구 봉수대로**번길 ** ** **동 **호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번길** ** **동 **호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8	결정	오류동	837	답	2,194	531	이**	인천 연수구 해송로 ** ** **동 **호			
							이**	인천 강화군 강화읍 새말길 ** **동 **호	강화군		압류
							박**	인천 서구 봉화로 237-18 (금곡동)			
							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 ** **동 **호			
							이**	인천 서구 완정로 ** ** **동 **호			
							이**	김포시 김포한강 **로**번길 ** ** **동 **호			
							이**	인천 서구 완정로** 번안길 ** (마전동)			
29	결정	오류동	834	전	1,046	107	김**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 ** ** **동 **호			
							김**	인천 중구 은하수로 ** ** **동 **호			
30	결정	오류동	834-12	전	438	437	김**	인천 서구 오류동 **			
31	결정	오류동	822-7	전	62	62	조**	인천 서구 마전동 ** ** **동 **호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2	결정	오류동	822-3	전	18	18	최**	인천 서구 마전동 **			
33	결정	오류동	383-56	도	15,309	22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34	결정	오류동	434-560	염	82	8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5	결정	오류동	434-556	장	28	28	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 ** (오류동)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2가) (남동공단기업금융2센터)	근저당권
36	결정	오류동	434-555	장	68	2	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 ** (오류동)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2가) (남동공단기업금융2센터)	근저당권
37	결정	오류동	434-334	염	50	5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38	결정	오류동	434-301	장	1,469	170	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 ** (오류동)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2가) (남동공단기업금융2센터)	근저당권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 ** (오류동)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2가) (남동공단기업금융2센터)	근저당권
							김**	서울 양천구 목동 ** ** **동 **호			
							안**(주)	인천 서구 석남동 223-265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서지점)	가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코**(주)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동 **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			
							김**	서울 영동포구 당산동 **가 ** ** **동 **호	국	파주세무서	압류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김포시		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구로지점내 강서지역관리센터)	가압류
							㈜태**	인천 서구 석남동 **	김**	안동시 운안동 **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 (인천서지점)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가 ** (인천지점)	가압류
									대한보증보험(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가압류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지부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빌딩 (수원지점)	가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태**	인천 서구 석남동 **	대한보증보험(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인천지점)	근저당권
									두**(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	근저당권
									(주)서울신탁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신정동지점)	근저당권
							김**	서울 강남구 도곡동 ** ** **동 **호			
							이**	인천 남구 용현동 **			
							신**	서울 도봉구 번동 **			
							함**	인천 남구 도화동 **	(주)정리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인천지사)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빌딩 (인천지점)	가압류
									국	인천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빌딩 (강북신용지원단)	강제경매개시결정
							㈜정**	인천 계양구 효성동 **	국	북인천세무서	압류
									이**	서울 강동구 길동 ** ** **동 **호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대**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지점)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서지점)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가압류
									대한보증보험(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인천지점)	근저당권
							문**	인천 남구 도화동 **			
							이**	인천 서구 검암동 **			
							이**	인천 서구 가정동 ** ** **동 **호			
							김**	서울 도봉구 수유동 **	현**(주)	용인시 남사면 북리 **	가압류
									국	도봉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강북구		압류
							최**	인천 서구 신현동 ** ** **동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대**	인천 서구 가좌동 **	롯**(주)	서울 강남구 대치동 **	가압류
									국	서인천 세무서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동**	인천 서구 석남동 **	국민연금 관리공단	인천지부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국	서인천 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안**	인천 동구 송현동 **			
							광**(주)	인천 남동구 논현동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압류
							이**	인천 서구 가좌동 ** ** **동 **호			
							영**(주)	인천 서구 오류동 **	국	서인천 세무서	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강서지역관리센터)	가압류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나**	인천 남구 동촌동 ** ** **동 **호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서지점)	가압류
									현**(주)	용인시 남사면 북리 **	가압류
									국	남인천세무서	압류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빌딩 (인천지점)	가압류
									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 **동 **호	근저당권
							(주)삼덕	인천 서구 두루물로 ** (오류동)			
							㈜부**	인천 서구 오류동 **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인천서지점)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부평지점)	가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장**	서울 관악구 신림동 ** ** **동 **호			
							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 **동 **호			
							장**	인천 부평구 산곡**동 **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박**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			
							조**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이**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신**	서울 은평구 신사동 **			
							배**	인천 서구 가좌동 ** ** **동 **호			
							송**	대전 서구 월평동 ** **층			
							최**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동 **호			
							백**	서울 구로구 오류동 **			
							허**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동 **호			
							신**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 ** **동 **호			
							최**	인천 계양구 박촌동 ** ** **동 **호			
							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			
							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 **동 **호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 ** **동 **호			
							디**(주)	인천 서구 오류동 **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인천 원당지점)	근저당권
							조**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 지점)	근저당권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검단산업단 지지점)	근저당권
							윤**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 북로 ** ** **동 **호	(주)우리 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옥련동지 점)	근저당권
							강**	인천 서구 원당대로** 번길 ** (오류동)			
							김**	인천 계양구 당미길 ** ** **동 **호	계양농업 협동조합	인천 계양구 박촌동 101-4 (동양지점)	근저당권
							김**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	(주)한국씨 티은행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경서동지 점)	근저당권
							박**	인천 부평구 일신동 **			
							㈜태**	인천 서구 두루물로** 번길 ** (오류동)	(주)국민 은행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 로8길 26 (여의도동) (검단산업 단지종합금 융센터)	근저당권
							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 가) (검단산업 단지지점)	근저당권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 ** **동 **호			
							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삭시 로**번길 **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삭시로**번길 **			
							㈜삼**	인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유**	인천 부평구 부개로 ****** **동 **호)	(주)국민은행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일산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퓨**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나길 **, **호*			
							㈜새**	인천 서구 원당대로 **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이**	인천 서구 검단로 ****** **동 **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심곡동지점)	근저당권
							㈜대**	인천 서구 길무로 ** (오류동)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임학동지점)	근저당권
							㈜하**	인천 서구 두루물로**번길 ** (오류동)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오왕지점)	근저당권
							이**	서울 구로구 경인로****** **동 **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인천원당지점)	근저당권
							서**	인천 부평구 부일로****** **동 **호			
							김**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동 **호			
							황**	서울 강서구 유현로****** **동 **호			
							황**	서울 강서구 강서로****** **동 **호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김**	인천 서구 연희로**번길 ** ** **동 **호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김포한강금융센터)	근저당권
							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인천원당지점)	근저당권
							지**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 ** **동 **호	(주)국민은행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계산역지점)	근저당권
							김**	인천 서구 검단로**번안길 ** ** **동 **호			
							㈜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 **호			
							㈜나**	인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인천주안금융센터)	근저당권
							배**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 ** **동 **호	(주)국민은행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청천동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원**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 ** **동 **호	(주)국민은행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청천동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김**	인천 계양구 살라리로 ** ** **동 **호			
							김**	서울 관악구 신림로**다길 **, **호(신림동)			
							강**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 ** **동 **호			
							김**	인천 계양구 서운로 ** ** **동 **호			
							한**	인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등촌역지점)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결정	오류동	434-316	제	730	175	신**	인천 서구 원당대로 **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등촌역지점)	근저당권
							㈜청**	서울 마포구 성암로**길 **, **호 (상암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인천지점)	근저당권
							(주)케**	인천 서구 두루물로 **번길 ** (오류동)	(주)우리 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검단신도시지점)	근저당권
							(주)아**	인천 서구 두루물로 **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
							㈜서**	인천 서구 두루물로 **번길 ** (오류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인천북항지점)	근저당권
40	결정	오류동	850-6	대	3,379	13	이**	인천 서구 완정로** 번안길 ** ** **동 **호			
41	결정	오류동	850-24	답	293	293	이**	인천 서구 완정로** 번안길 ** ** **동 **호			
42	결정	오류동	847-2	제	347	194	국	국토교통부			
43	결정	오류동	846	대	1,586	59	김**	인천 서구 봉수대로 **번길 ** (금곡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지점)	근저당권
44	결정	오류동	847-3	답	52	52	김**	인천 서구 봉수대로 **번길 ** (금곡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검단지점)	근저당권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5	결정	오류동	847-6	도	29	29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46	결정	오류동	847-5	답	23	23	김**	인천 서구 봉수대로**번길 ** (금곡동)			
47	결정	오류동	846-2	답	14	14	김**	인천 서구 봉수대로**번길 ** (금곡동)			
48	결정	오류동	산30	임	893	411	배**				
49	결정	오류동	산28-1	임	33,969	582	광**	인천 서구 완정로**번길 **, **층			
50	결정	오류동	871-4	구	1,678	182	국	국토교통부			
51	결정	오류동	842-5	답	1,055	183	이**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			
52	결정	오류동	842-7	전	1,082	75	서**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3	결정	오류동	839-2	답	575	62	권**	인천 서구 봉화로 ** ** **동 **호			
54	결정	오류동	837-2	답	12	12	이**	인천 서구 봉화로** 번길 ** (오류동)			
							이**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			
							이**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이**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김**	서구 봉수대로 **번길 ** ** **동 **호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번길 **, **호			
							이**	인천 연수구 해송로 ** ** **동 **호			
							이**	인천 강화군 강화읍 새말길 ** **동 **호			
							박**	인천 서구 봉화로 ** (금곡동)			
							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 ** **동 **호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4	결정	오류동	837-2	답	12	12	이**	인천 서구 완정로 ** ** **동 **호			
							이**	김포시 김포한강 **로**번길 ** ** **동 **호			
							이**	인천 서구 완정로** 번안길 ** (마전동)			
55	결정	오류동	837-1	답	246	8	이**	인천 서구 봉화로** 번길 ** (오류동)			
							이**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			
							이**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이**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김**	서구 봉수대로 **번길 ** ** **동 **호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번길**, **호			
							이**	인천 연수구 해송로 ** ** **동 **호			
							이**	인천 강화군 강화읍 새말길 ** **동 **호			
							박**	인천 서구 봉화로 ** (금곡동)			

구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변경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5	결정	오류동	837-1	답	246	8	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 ** **동 **호			
							이**	인천 서구 완정로 ** ** **동 **호			
							이**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 ** **동 **호			
							이**	인천 서구 완정로**번안길 ** (마전동)			
56	결정	오류동	821	답	79	2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57	결정	오류동	821-1	답	55	5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58	결정	오류동	799-6	도	4,430	6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원당대로~검단로(오류동 중로1-126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결정	오류동	434-557	담장	메쉬휀스 (H=1.6, L=7.0)	11.2	㎡	㈜새**	인천 서구 원당대로 ** (오류동)	
				간판	판넬 (H=6.0, L=16.0)	96.0	㎡			
				담장	콘크리트블럭 (H=0.6, L=13.0)	7.8	㎡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2	결정	오류동	434-302	담장	콘크리트블럭 (H=2.0, L=36.0)	72.0	㎡	제**(주)	인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창고	철재, 천막	11.5	㎡			
				공장	판넬, 함석	622.8	㎡			
				울타리	메쉬휀스 (H=1.0, L=19.0)	19.0	㎡			
				공장	철재, 천막	336.6	㎡			
				공장	철재, 천막	192.5	㎡			
				사무실	컨테이너 (2.4x3.0x9.0)	2.0	개소			
				사무실	컨테이너 (2.4x3.0x6.0)	1.0	개소			
				사무실	컨테이너 (2.4x3.0x4.0)	1.0	개소			
				창고	컨테이너 (2.4x3.0x3.0)	1.0	개소			
				사무실	벽돌, 슬라브	29.4	㎡			
				담장	콘크리트블럭 (H=1.6, L=34.0)	54.4	㎡			
				출입문	철재 (H=1.6, L=5.0)	8.0	㎡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3	결정	오류동	850-24	출입문	철재 (H=1.2, L=7.0)	8.4	㎡	이**	인천 서구 왕길동 **	
				담장	메쉬휀스 (H=1.5, L=15.0)	22.5	㎡			
				담장	철재 (H=1.0, L=8.0)	8	㎡			
				사무실	컨테이너 (2.4x3.0x6.0)	1	개소			
4	결정	오류동	874-4	창고	컨테이너 (2.4x3.0x6.0)	1	개소	김**	인천 서구 봉수대 로 ** 번길 **	
				담장	판넬 (H=1.0, L=16.0)	16.0	㎡			
				사무실	컨테이너 (2.4x3.0x6.0)	2	개소			
5	결정	오류동	846-1	사무실	컨테이너 (2.4x3.0x6.0)	1	개소	최**	충남 당진시 송산면 장재길 **	
				담장	판넬 (H=1.9, L=26.0)	49.4	㎡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5	결정	오류동	850-24	공장	블록, 스레트	27.5	㎡	최**	충남 당진시 송산면 장재길 **	
				창고	컨테이너 (2.4x3.0x6.0 R.P)	1	개소			
				공장	블록, 스레트	68.3	㎡			
6	결정	오류동	847-5	사무실	컨테이너 (2.4x3.0x6.0)	1	개소	김**	인천 서구 봉수대로**번길 ** (금곡동)	
				담장	천막 (H=1.0, L=16.0)	16	㎡			
7	결정	오류동	843-2	담장	판넬 (H=3.0, L=23.0)	69.0	㎡	최**	충남 당진시 송산면 장재길 **	
				공장	판넬, 함석	274.0	㎡			
8	결정	오류동	434-398	울타리	메쉬휀스 (H=1.5, L=28.0)	42.0	㎡	이**	김포시 검단면 오류리 **	
				창고	컨테이너 (2.4x3.0x6.0)	1	개소			
9	결정	오류동	842-6	창고	판넬, 함석	15.3	㎡	이**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 **동 **호	
10	결정	오류동	383-16	담장	철재 (H=1.2, L=9.0)	10.8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사 업 인 정 의 견 서

사 업 명	원당대로~검단로(오류동 구도 1843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예정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314 일원	
의견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도로구역(구도 1843호선) 결정 및 사업인정(의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 -11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보건복지부 심사표준매뉴얼(2025.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신규시설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 갱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신설(안 제10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를 구체화하고, 지정 갱신에 대한 갱신심사기준표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2)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 전화 032)560-4561, 팩스 032)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보건복지부 심사표준매뉴얼(2025.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신규시설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 갱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신설(안 제10조)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를 구체화하고, 지정 갱신에 대한 갱신심사기준표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사)”를 “(심사·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80점”을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으로, “원안 의결”을 “적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80점”을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부결”을 각각 “부적격”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시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 기관명 :

<table>
<tr><th>항목</th><th>심사 기준</th><th>배점</th><th>점수</th></tr>
<tr><td rowspan="2">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td><td>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td><td>20</td><td></td></tr>
<tr><td>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table>
<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5점</td><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3점</td><td>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0점</td><td>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
</table>

</td><td>5</td><td></td></tr>
</table>

<table>
<tr>
<td></td>
<td>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table>
<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
<tr><td colspan="3">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td></tr>
</table>

</td>
<td>10</td>
<td></td>
</tr>
<tr>
<td rowspan="3">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td>
<td>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4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td></tr>
<tr><td>3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td></tr>
<tr><td>1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td></tr>
</table>

</td>
<td>4</td>
<td></td>
</tr>
<tr>
<td>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td></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td></tr>
<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td></tr>
</table>

</td>
<td>3</td>
<td></td>
</tr>
<tr>
<td>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td></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td></tr>
<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td></tr>
</table>

</td>
<td>3</td>
<td></td>
</tr>
</table>

<table>
<tr><td></td><td>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 rowspan="3">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td><td>2점</td><td>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td></tr>
<tr><td>1점</td><td>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td></tr>
<tr><td>0점</td><td>해당없음</td></tr>
<tr><td rowspan="3">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td><td>2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td></tr>
<tr><td>1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td></tr>
<tr><td>0점</td><td>1종 급여 제공</td></tr>
</table>

</td><td>2</td><td></td></tr>
<tr><td rowspan="2">**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td><td>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5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td></tr>
<tr><td>4점</td><td>우수</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td></tr>
<tr><td>3점</td><td>보통</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td></tr>
<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td></tr>
</table>

</td><td>5</td><td></td></tr>
<tr><td>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td></tr>
<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td></tr>
<tr><td>4점</td><td>보통</td><td>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td></tr>
</table>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td><td>8</td><td></td></tr>
<tr><td rowspan="2">**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td><td>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table>
<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5점</td><td>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td></tr>
<tr><td>0점</td><td>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td></tr>
</table>

</td><td>5</td><td></td></tr>
<tr><td>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td><td>5</td><td></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5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충실하게 작성</td></tr>
<tr><td>4점</td><td>우수</td><td>계획서 적정하게 작성</td></tr>
<tr><td>3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
<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
</td><td></td><td></td></tr>
<tr><td rowspan="3">5.
자체 심사항목
(10점)</td><td>
5-1.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또는 장기요양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운영 또는 근무한 경력의 합으로 산출
<table>
<tr><th>점수</th><th>운영 또는 근무경력</th></tr>
<tr><td>5점</td><td>5년 이상</td></tr>
<tr><td>4점</td><td>4년 이상 5년 미만</td></tr>
<tr><td>3점</td><td>3년 이상 4년 미만</td></tr>
<tr><td>2점</td><td>2년 이상 3년 미만</td></tr>
<tr><td>1점</td><td>2년 미만</td></tr>
</table>
</td><td>5</td><td></td></tr>
<tr><td>
5-2.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 계획(2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
</td><td>2</td><td></td></tr>
<tr><td>
5-3. 안전관리 규정 수립여부(3점)
-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설비 등 안전에 관한 사항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3점</td><td>매우우수</td><td>규정을 충실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우수</td><td>규정을 적정하게 작성</td></tr>
<tr><td>1점</td><td>보통</td><td>규정 작성</td></tr>
<tr><td>0점</td><td>미흡</td><td>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
</td><td>3</td><td></td></tr>
<tr><td>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td><td>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table>
<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배점</th></tr>
<tr><td>4점</td><td>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td></tr>
<tr><td>4점</td><td>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td></tr>
<tr><td>4점</td><td>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td></tr>
<tr><td>4점</td><td>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td></tr>
<tr><td>4점</td><td>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td></tr>
</table>
</td><td>20</td><td></td></tr>
</table>

총점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2. 복지용구

□ 기관명 :

<table>
<tr><th>항목</th><th>심사 기준</th><th>배점</th><th>점수</th></tr>
<tr><td rowspan="2">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td><td>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td><td>20</td><td></td></tr>
<tr><td>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table>
<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5점</td><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3점</td><td>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0점</td><td>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
</table>

</td><td>5</td><td></td></tr>
</table>

<table>
<tr>
<td></td>
<td>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table>
<tr><th>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
<tr><td>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td></tr>
</table>

</td>
<td>10</td>
<td></td>
</tr>
<tr>
<td rowspan="3">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td>
<td>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10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td></tr>
<tr><td>8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td></tr>
<tr><td>6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td></tr>
<tr><td>4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td></tr>
</table>

</td>
<td>10</td>
<td></td>
</tr>
<tr>
<td>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이상)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td></tr>
</table>

</td>
<td>2</td>
<td></td>
</tr>
<tr>
<td>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td></tr>
<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td></tr>
<tr><td>4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td></tr>
<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td></tr>
</table>

</td>
<td>8</td>
<td></td>
</tr>
</table>

<table>
<tr><td rowspan="2">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td><td>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td></tr>
<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

</td><td>3</td><td></td></tr>
<tr><td>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

</td><td>2</td><td></td></tr>
<tr><td rowspan="2">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td><td>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충실하게 작성</td></tr>
<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적정하게 작성</td></tr>
<tr><td>3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

</td><td>8</td><td></td></tr>
<tr><td>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8점</td><td>매우우수</td><td>매뉴얼, 용구, 장비 충실히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완벽히 구비)</td></tr>
<tr><td>6점</td><td>우수</td><td>매뉴얼, 용구, 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적정하게 구비)</td></tr>
<tr><td>4점</td><td>보통</td><td>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구비)</td></tr>
<tr><td>2점</td><td>미흡</td><td>매뉴얼, 용구, 장비가 있으나 미흡 (위탁시설 : 증명서류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사업소 (위탁시설 : 위탁서류가 없음)</td></tr>
</table>

</td><td>8</td><td></td></tr>
</table>

<table>
<tr>
<td></td>
<td>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 colspan="3">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td></tr>
<tr><td>4점</td><td>매우우수</td><td>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td></tr>
<tr><td>3점</td><td>보통</td><td>①,② 모두 마련</td></tr>
<tr><td>2점</td><td>미흡</td><td>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td></tr>
</table>
</td>
<td>4</td>
<td></td>
</tr>
<tr>
<td>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td>
<td>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table>
<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배점</th></tr>
<tr><td>5점</td><td>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td></tr>
<tr><td>5점</td><td>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td></tr>
<tr><td>5점</td><td>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td></tr>
<tr><td>5점</td><td>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td></tr>
</table>
</td>
<td>20</td>
<td></td>
</tr>
<tr>
<td>총점</td>
<td colspan="3">점</td>
</tr>
</table>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 기관명 :

<table>
<tr><th>항목</th><th>심사 기준</th><th>배점</th><th>채점</th></tr>
<tr><td rowspan="2">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td><td>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대표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h></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td><td>20</td><td></td></tr>
<tr><td>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td><td>15</td><td></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td><td>
<table>
<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
<tr><td>① A등급(15점)</td><td>② B등급(12점)</td><td>③ C등급(9점)</td></tr>
<tr><td>④ D등급(6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td></tr>
</table>
</td><td></td><td></td></tr>
<tr><td>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휴업(①, 2점)과 폐업(②, 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
<table>
<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2점</td><td>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1점</td><td>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0점</td><td>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
</table>
② 폐업이력(3점)
<table>
<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3점</td><td>폐업 이력 1회 이하</td></tr>
<tr><td>2점</td><td>폐업 이력 2회</td></tr>
<tr><td>0점</td><td>폐업 이력이 3회 이상</td></tr>
</table>
</td><td>5</td><td></td></tr>
<tr><td rowspan="3">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td><td>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 rowspan="2">연간
사업계획</td><td colspan="2">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td><td>2점</td></tr>
<tr><td rowspan="2">정기평가</td><td>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
<tr><td>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td><td>1점</td></tr>
</table>
</td><td>4</td><td></td></tr>
<tr><td>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으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부여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교육실시</td><td colspan="2">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
<tr><td>교육지원</td><td colspan="2">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td><td>1점</td></tr>
</table>
</td><td>2</td><td></td></tr>
<tr><td>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 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td><td>6</td><td></td></tr>
</table>

-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방문형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1점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을 시군구에 제출·보고하고 있다	1점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②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② 안전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9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수준(7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② 고충처리(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7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

12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총점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2.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제외)

□ 기관명 :

<table>
<tr><th>항목</th><th>심사 기준</th><th>배점</th><th>채점</th></tr>
<tr><td rowspan="2">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td><td>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대표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td><td>20</td><td></td></tr>
<tr><td>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table>
<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
<tr><td>① A등급(15점)</td><td>② B등급(12점)</td><td>③ C등급(9점)</td></tr>
<tr><td>④ D등급(6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td></tr>
</table>

</td><td>15</td><td></td></tr>
</table>

<table>
<tr>
<td></td>
<td>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휴업(①, 2점)과 폐업(②, 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
<table>
<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2점</td><td>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1점</td><td>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0점</td><td>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
</table>
② 폐업이력(3점)
<table>
<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3점</td><td>폐업 이력 1회 이하</td></tr>
<tr><td>2점</td><td>폐업 이력 2회</td></tr>
<tr><td>0점</td><td>폐업 이력이 3회 이상</td></tr>
</table>
</td>
<td>5</td>
<td></td>
</tr>
<tr>
<td rowspan="3">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td>
<td>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연간 사업계획</td><td>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td><td>2점</td></tr>
<tr><td rowspan="2">정기평가</td><td>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
<tr><td>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td><td>1점</td></tr>
</table>
</td>
<td>4</td>
<td></td>
</tr>
<tr>
<td>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으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부여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교육실시</td><td>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
<tr><td>교육지원</td><td>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td><td>1점</td></tr>
</table>
</td>
<td>2</td>
<td></td>
</tr>
<tr>
<td>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 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td>
<td>6</td>
<td></td>
</tr>
</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방문형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1점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table>
<tr>
<td rowspan="2"></td>
<td>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 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td>
<td>**8**</td>
<td></td>
</tr>
<tr>
<td>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② 안전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td>
<td>**4**</td>
<td></td>
</tr>
<tr>
<td>**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td>
<td>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td>
<td>**9**</td>
<td></td>
</tr>
</table>

<table>
<tr>
<td rowspan="2"></td>
<td>

② 급여수준(7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td>
<td></td>
<td></td>
</tr>
<tr>
<td>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② 고충처리(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td>
<td>**7**</td>
<td></td>
</tr>
<tr>
<td>**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td>
<td>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td>
<td>**12**</td>
<td></td>
</tr>
</table>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총점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3. 복지용구

□ 기관명 :

<table>
<tr><th>항목</th><th>심사 기준</th><th>배점</th><th>채점</th></tr>
<tr>
<td rowspan="2">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td>
<td>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 처분 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대표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td>
<td>20</td>
<td></td>
</tr>
<tr>
<td>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table>
<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
<tr><td>① A등급(15점)</td><td>② B등급(12점)</td><td>③ C등급(9점)</td></tr>
<tr><td>④ D등급(6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td></tr>
</table>

</td>
<td>15</td>
<td></td>
</tr>
</table>

<table>
<tr>
<td></td>
<td>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휴업**(①, 2점)과 **폐업**(②, 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② 폐업이력(3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td>
<td>5</td>
<td></td>
</tr>
<tr>
<td rowspan="3">**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td>
<td>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 사업계획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정기평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td>
<td>4</td>
<td></td>
</tr>
<tr>
<td>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으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부여
※ 시설장 등 종사자의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교육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td>
<td>2</td>
<td></td>
</tr>
<tr>
<td>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 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td>
<td>6</td>
<td></td>
</tr>
</table>

<table>
<tr>
<td rowspan="2"></td>
<td>
<table>
<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 rowspan="2">인권보호 및 고충처리</td><td>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td><td>1점</td></tr>
<tr><td>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td><td>1점</td></tr>
<tr><td rowspan="3">개인정보 보호</td><td>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td><td>1점</td></tr>
<tr><td>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td><td>1점</td></tr>
<tr><td>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td><td>2점</td></tr>
</table>
</td>
<td></td>
<td></td>
</tr>
<tr>
<td>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 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
- 구입제품에 대해서는 제공할 때, 대여제품에 대해서는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제공하였는지와 보호자의 서명(유선시 생략)을 받았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table>
<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td><td>1점</td></tr>
<tr><td>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td><td>1점</td></tr>
</table>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위탁 소독의 경우 계약서를 통해서 위탁소독기관을 파악하여 그 기관의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값을 반영
<table>
<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
<tr><td>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td><td>1점</td></tr>
</table>
</td>
<td>4</td>
<td></td>
</tr>
<tr>
<td>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td>
<td>
3-1. 복지용구 관리(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 한 공간에 보관 불가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후의 제품 별도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 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대장 등)
</td>
<td>4</td>
<td></td>
</tr>
</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2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재정운영(4점)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② 안전관리(2점)

4

<table>
<tr><td></td><td>
<table>
<tr><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h></th></tr>
<tr><td>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2점</td></tr>
</table>
</td><td></td><td></td></tr>
<tr><td>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td><td>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u>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u>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table>
<tr><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h></th></tr>
<tr><td>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td><td>1점</td></tr>
<tr><td>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td><td>1점</td></tr>
</table>
② 급여수준(7점)
<table>
<tr><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h></th></tr>
<tr><td>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복지용구의 경우 기본점수 부여)</td><td>4점</td></tr>
<tr><td>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td><td>2점</td></tr>
<tr><td>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td><td>1점</td></tr>
</table>
</td><td>9</td><td></td></tr>
<tr><td></td><td>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u>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u>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table>
<tr><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h></th></tr>
<tr><td>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
<tr><td>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td><td>2점</td></tr>
</table>
② 고충처리(4점)
<table>
<tr><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h></th></tr>
<tr><td>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td><td>2점</td></tr>
<tr><td>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d>2점</td></tr>
</table>
</td><td>7</td><td></td></tr>
<tr><td>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td><td>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td><td>12</td><td></td></tr>
</table>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총점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시설: 별표1 2.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설 : 별표2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시설 : 별표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② ----------. 1. ----------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 적격 2. ----------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 부적격. ---------- 부적격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2020. 12. 29., 2024. 1. 2.>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본조신설 2018. 12.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

0. 9. 29., 2025. 2. 28.>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9. 6. 12., 2020. 9. 29.>

[제11조에서 이동 <2008. 6. 11.>]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1., 2010. 9. 1., 2014. 2. 14., 2015. 12. 31., 2016. 11. 7., 2019. 6. 12., 2021. 6. 30.>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의 종사자가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6. 삭제 <2019. 6. 12.>
7. 삭제 <2019. 6. 12.>
8. 삭제 <2019. 6. 1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본다. <개정 2019. 6. 12.>

④ 삭제 <2019. 6. 12.>

[제목개정 2019. 6. 12.]

[제12조에서 이동 <2008. 6. 11.>]

의 견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국(군 · 구)별 의견			
협의개요	국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186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2. 공인 등록일 : 2025년 6월 2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등 록 공 인 목 록

□ 공인수량 1개

○ 석남2동

연번	공 인 명	종류	규 격(㎝)
1	석남2동장인 / 민원전용(인증기)	민원전용	2.1 x 2.1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석남2동장인 / 민원전용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2025년 6월 2일	

폐 기 공 인 목 록

□ 공인수량 4개

○ 석남2동

연번	공 인 명	종류	규 격(Cm)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 석남2동민원전용2(인증기)	민원전용	2.4 x 2.4
2	석남2동장인 / 민원전용2(인증기)	민원전용	2.1 x 2.1
3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 석남2동민원전용3(인증기)	민원전용	2.4 x 2.4
4	석남2동장인 / 민원전용3(인증기)	민원전용	2.1 x 2.1

▢ 폐기 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 석남2동민원전용2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	2025년 6월 2일	
석남2동장인 / 민원전용2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	2025년 6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 석남2동민원전용3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	2025년 6월 2일	
석남2동장인 / 민원전용3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	2025년 6월 2일	